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10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,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명칭 및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함(안 제2조)
나. 사용신청 및 허가 기간을 변경함(안 제11조) : 3년 → 5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도로명주소법」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다.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.(2015. 9.24.~2015.10.14)

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
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옥성리 356번지”를 “옥성4길 1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옥성리 349번지”를 “옥성4길 1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성산리 170-21번지”를 “성주로 3399”로 한다.
제11조제2항 단서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명칭 및 위치) 유통센터 등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명칭 및 위치) ----------.
1. 농산물 집하장, 선별장의 명칭은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(이하"유통센터라 한다)라 칭하고 위치는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356번지에 둔다.	1. ---------- 옥성4길 1 ----------.
2. 농산물 공판장의 명칭은 성주군 농산물산지공판장 (이하"공판장"이라 한다)이라 칭하고 위치는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349번지 일원에 둔다.	2. ---------- 옥성4길 1 ----------.
3. 농산물 전시판매장의 명칭은 성주군 농특산물전시판매장(이하"판매장" 이라 한다)이라 칭하고 위치는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70-21번지 일원에 두며 필요한 경우 성주군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및 서울 등 대도시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	3. ---------- 성주로 3399 ----------.
제11조(사용신청 및 허가) ① (생 략)	제11조(사용신청 및 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
②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단,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	② ----------. ---------- 5년 ----------.
③군수는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2월전에 다시 사용신청을 받아 3년 이내로 연장 허가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 5년 ----------.